상호 기밀 유지 각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 2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전자 주식회사 (이하 "갑"으로 칭함)와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38-1번지에 위치한 청송 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칭함)는 1996년 7월 3일부로 다음과 같이 상호 기밀 유지 약정서 (이하 "약정서"라 칭함)를 체결한다.

- 배 경 -

"갑"과 "을"은 Poly Dry Etch 장비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되어, 설계, 소자 구조, 발명, 제품, 제조, 공정, 재료, 소프트 웨어, 서비스, 도면, 테스트 데이터, 영업 데이터, 사업계획, 사업전략, 고용자, 고객, 재정과 관련된,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임의의정보, 기술적 데이터, Know-how(이하"기밀 및 소유정보"라 칭한다)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거래수행 과정에 있어서 상호 기밀 및 소유정보를 획득할 수있다.

- 내 용 -

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 내용으로 법적 책임(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상호("갑"및 "을"간에) 합의 한다.

제 1조: 위 약정 날자 이후로 3년간 "갑"과 "을"(각 회사의 직원 및 거래업자)은 각 회사의 기밀 및 소유정보에 속하는 내용에 대하여 상대 회사로부터 정식공문을 통한 허락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누출하지 아니한다.

제 2조: "갑"과 "을"은 각각 소유한 기밀 및 소유정보가 이 정보를 제공한 측의 유일 하고도 독점적인 소유권리임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제 3조: "갑"과 "을"은 제공되어진 모든 기밀 및 소유정보가 제 5조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제공한 측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각 회사 자체에서 요구되는 기밀 및 소유정보 수준으로 비중을 두어 다루어지고 보호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조사, 실험, 개발, 상업적 혹은 다른 사업에 이 기밀 및 소유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제 4조: 본 각서에 의하여 "갑"과 "을 양측은 기밀 및 소유정보의 교환이 "갑"과 "을" 양측에 한하여만 제한되며, 양측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러한 모든 정보가 "갑"과 "을"을 제외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에 동의한다.

5-4.000N

4165



- 제 5조: 아래의 상황 아래서는 상호 기밀 및 소유정보에 관하여 본 각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 (a) 정부 및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상호기밀에 관한 정보를 제출시 사전에 상대측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에 사전 통보했을 경우
 - (b) 기밀정보를 알게 된 측이 각서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이 권리 소멸상태가 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 (c) 각서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이 그리고 정보의 사용이나 전파에 관하여 기밀 정보를 합법적으로 획득한 제 3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 (d) 정보를 공개할 시점에서 그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어 기밀정보를 접수한 측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거나 그런 정보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전되어져 사용 되거나 공개될 경우
 - (e) 정보 입수 후 3년이 경과한 기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 제 6조: "갑"과 "을"은 제품의 평가 및 개발과 관련되어 알 필요성을 지닌 "갑"과 "을" 각사의 종업원 이외의 어떠한 종업원들에게도 상대측으로부터 접수한 기밀 및 소유 정보를 광개하지 않으며 공개된 기밀 및 소유 정보를 알고 있는 종업원들에게는 이 각서에 주어진 제한 규정을 인지시키도록 합의한다.
- 제 7조: 이 각서는 상기 약정 체결 당일로 부터는 물론 "갑"이 "을"에게 이미 제공한 기밀 및 소유 정보에 대해서도 소급되어 법적 효력을 지니며, 약정 체결시의 기밀 및 소유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지속적인 의무는, "갑"과 "을" 사이 에서 기밀 및 소유정보의 교환을 종결한다는 서면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적 효력을 지닌다.
- 제 8조: 이 약정이 만료될 때 "갑"과 "을" 각각은 이 약정서 체결 후 받은 모든 기밀과 소유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상대측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한 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외에는 기밀과 소유정보에 대한 어떠한 사본도 가질 수 없다.
- 제 9조: "갑"과 "을"은 서로 어떠한 위임권한도 지니고 있지 아니하며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적용 이외에는 이 각서에 따라 취득한 어떠한 기밀과 소유 정보도 제 3자에게 허락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권한도 지니고 있지 않는다.
- 제 10조: 본 각서에 따라 상대측에 기밀 및 소유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상대측에 기밀 및 소유정보에 관한 임의의 권리나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Y. MOON

9K5

제 11조: "갑"과 "을"은 서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호 교환시 상대측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약정서에 따라 제공된 모든 기밀 및 소유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보증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합의 한다.

제 12조: "갑"과 "을" 양측은 어느 측이든 만약 기밀과 소유정보가 누출되면 그 정보를 누출한 측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합당한 소송 및 변호비용을 보상 하여야 하며 이 약정서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도 보호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제 13조: "갑"과 "을"은 다른 기업의 자산 취득이나 합병과 연관된 사항 이외에는 이 약정서에 의하여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어떠한 권리, 책임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할당할 수 없다.

제 14조: 이 약정서의 조항들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적용된다.

제 15조: 이 약정서의 조항들은 분리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조항 혹은 조항의 구성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본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하여 상호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삼성전자 주식회사 서명: 5 / 1000 / 성명: 군 상 영 직위: 이 사 일자: 196.7.3

청송 시스템 주식회사

MB: 5/6 GIN

직위: 417/2012

일자: /f/6, 7,3